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의자: 이성수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,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(안 제 5조)
-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2조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#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,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(2024. 5. 16.)되었음.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한편,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.
 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·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
  - 「병역법」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육군·해병 2년, 해군 2년 2개월, 공군 2년 3개월(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, 20개월, 21개월로 단축시행 중)이며, 보충역 및 대체역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, 최대 3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복무기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연령 기준을 “34세 이하”에서 “39세 이하”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, 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제3항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빌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계획이 포함된 경우, 이를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임.

-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,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,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.
- 이를 통해 복무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,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제대군인 청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임.
- 안 제13조(비밀유지 의무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, 복무기간을 고려한 지원연령 상한 조정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,
- 이를 통해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에 대한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651
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의자: 이성수·차인영·이순우·우경란·최인순  
임현호·이규선·최봉희·정선희 의원(9인)

## 1. 제안이유

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,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(안 제 5조)
- 다.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2조)
- 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주하는”을 “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34세”를 “39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(비밀유지 의무)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3조(비밀유지 의무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